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569호

나. 발 의 자 : 김원중 의원(찬성자 20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02월 05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02월 07일

2. 제안이유

- 23년도 의원연구단체에서 진행한 서울의 봉제산업 활성화와 소상공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한 소규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신규 인력의 유입과 전문인력 교육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과 학교·대학 등 기간과 도시소공인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내용을 명문화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양성을 위한 내용에 청년교육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학교, 대학 등 기간과 도시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2항의 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청년교육 사업과 교육기관 및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가하고(안 제5조제2항제6호,제7호 신설), 도시형소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안 제17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 현황

- 서울시는 도시형소공인¹⁾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도시형소공인

1) 도시형소공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인쇄, 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출판 등 분야 종사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10.8.)하고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육성,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도시형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스마트앵커 조성,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서울시의 5대 제조업은 열악한 노동 환경, 저임금·고령화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서울시가 그동안 시행한 사업에 있어서도 ▶근로자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의 부재, ▶판로개척 및 자금확보 지원 정책의 미흡, ▶기술 혁신과 청년인력 유입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그리고 서울시는 그 대책으로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술혁신 가속화에 따른 소공인 제조혁신 역량 제고, ▶제조지원센터 활성화에 의한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5년간 도심제조업 분야에 700억원을 투자하여 인재 7,000명 육성, 사업장 자동화, 젊은 인재 유입을 위한 ‘소상공 기술경진대회’ 신설 등 제조환경 개선과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²⁾.

2)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2023.7.)

다. 청년교육사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설(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안 제5조제2항 제6호 및 제7호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 도시형소공업에 대한 청년교육 사업, ▶ 학교, 대학 등의 기관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임.
- 이는 현재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도시형소공업 분야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보수, 도제식 기술 전수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유입이 저조하고, 전문기술학교나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연계된 기술 전수·습득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에 따라 청년인력과 청년창업자 육성 과정이 포함된 도시형소공업 인력 양성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는 개정조례안을 통해 추가하고자 하는 ‘도시형소공업에 대한 청년교육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시 도시형소공업 청년교육사업 현황 >

- 추진주체 : 제조지원센터
- 교육내용 : CAD, 봉제기술 교육 등 기술인재 양성 및 청년 창업자 육성 사업
- 교육실적(2023년) : 총 779회, 2,582명
 - * 2,378시간 교육 진행, 51명 청년 창업자 육성

- 따라서 안 제5조제2항제6호는 청년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 인재 유입을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기존 규정과 중복된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현재 서울시는 동 개정조례안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따라 서울도시제조허브와 제조지원센터³⁾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사업의 발굴과 전문가·지역 소공인·청년 창업가와의 협업을 통한 일감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도시제조허브 개요 >

- 시설명 : 서울도시제조허브 *(구)광역소공인특화센터(2023년 명칭변경)
- 운 영 : SBA(수탁사업)
- 위 치 :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7길 9(성수동2가)
- 주요시설 : 공용장비 및 시제품제작, 협업아틀리에, 교육 및 소공인 지원 사무공간 등
- 주요기능 : ▶총괄-기획-조정-연결 기능을 갖춘 도시제조업 종합지원 컨트롤타워
▶허브 구축을 통해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
- 2024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협력 네트워크	제조지원센터장 및 유관기관장 구성, 소통 및 협력 강화	연 3회(4·7·10월)
도시제조업실태 자문회의	5대 업종 전문가 구성 및 도시제조업 지원 정책 방향 수립	연 2회(5·9월)
허브운영협의체	운영사 및 외부 자문위원 구성 및 허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연 2회(3·12월)

- 다만 현행 조례(제12조제2항제3호)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기관·단체 간의 서비스 연계로 국한되어 있고, 이마저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지원업무로 한정되어 있음.

3) 제조지원센터: ▶금천솔루션앵커(패션), ▶창신솔루션앵커(패션), ▶강동솔루션앵커(가죽), ▶도봉솔루션앵커(양말), ▶성북솔루션앵커(패션), ▶강북솔루션앵커(패션) 총 6곳. 청년을 포함한 직업 교육과 사업장 지원 등을 수행.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교육·대학 등의 기관과 도시형 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청년인재의 유입에 따른 도심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수정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① (생 략)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도시형소공업에 대한 청년 교육 사업 7. 학교, 대학 등의 기관과 도시형소공인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개정안과 같음)

라. 온라인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안 제17조 신설)

- 안 제17조는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소공인 지원 포털⁴⁾(2023.1.)’ 을 개설하고,

4) 서울시소공인지원포털: <http://www.seoulsbiz.or.kr>

도시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정책, 장비·공간 지원사업, 구인정보 등을 제공중인 상황임.

-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 소공인 지원 포털’의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운영 및 그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